

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FAQ

□ 구매연계형 과제(해외수요처)

- (질문) 해외수요처가 국외정부인데 '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'를 필수로 업로드해야 하나요?

< 답변 >

- 아니요, 해외 정부 및 국제기구는 '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'는 제출 면제입니다.

* 신청 및 문의처 : 한국무역보험공사(www.ksure.or.kr) 또는 1588-3884

- (질문) 해외수요처가 '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'를 신청했는데 발급이 늦을 것 같습니다. 공고마감일 이후 제출해도 되나요?

< 답변 >

- 과제 신청 시, 신용조사 보고서 신청서를 첨부하고, 요건검토 기간에 보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요건검토 시 보고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E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- (질문) 해외수요처 과제책임자의 과학기술인번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?

< 답변 >

- 해외수요처 과제책임자의 경우 과학기술인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

- '00000000'의 형태로 숫자 0을 8번 입력하실 경우 자동으로 넘어갑니다.

* 오류 발생 시 문의처 : SMTECH 시스템 문의처(국번없이 1357)

- (질문) 해외수요처 담당자를 꼭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하나요?

< 답변 >

- 가급적 외국인으로 등록하여 주시되, 등록이 안 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, 실무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연구원으로 등록하셔도 무방합니다.

* 오류 발생 시 문의처 : SMTECH 시스템 문의처(국번없이 1357)

- (질문) 해외수요처 납기일(Delivery date)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?

< 답변 >

- 해외수요처 증빙서류의 납기일(Delivery date)은 기술개발 종료이후로 되어야 합니다.

○ (질문) 해외수요처 기관등록은 어떻게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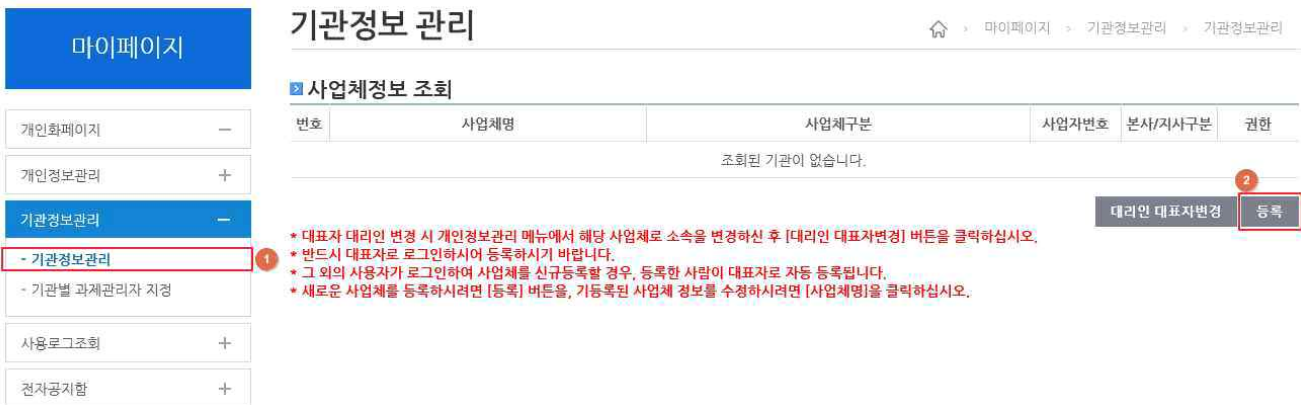
< 답 변 >

- 해외수요처는 외국업체나 기관이므로 smtech사이트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직접 기관등록이 어려울 경우, **주관연구개발기관**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, 실무담당자를 제외한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다른 연구원이 마이페이지에서 임의로 기관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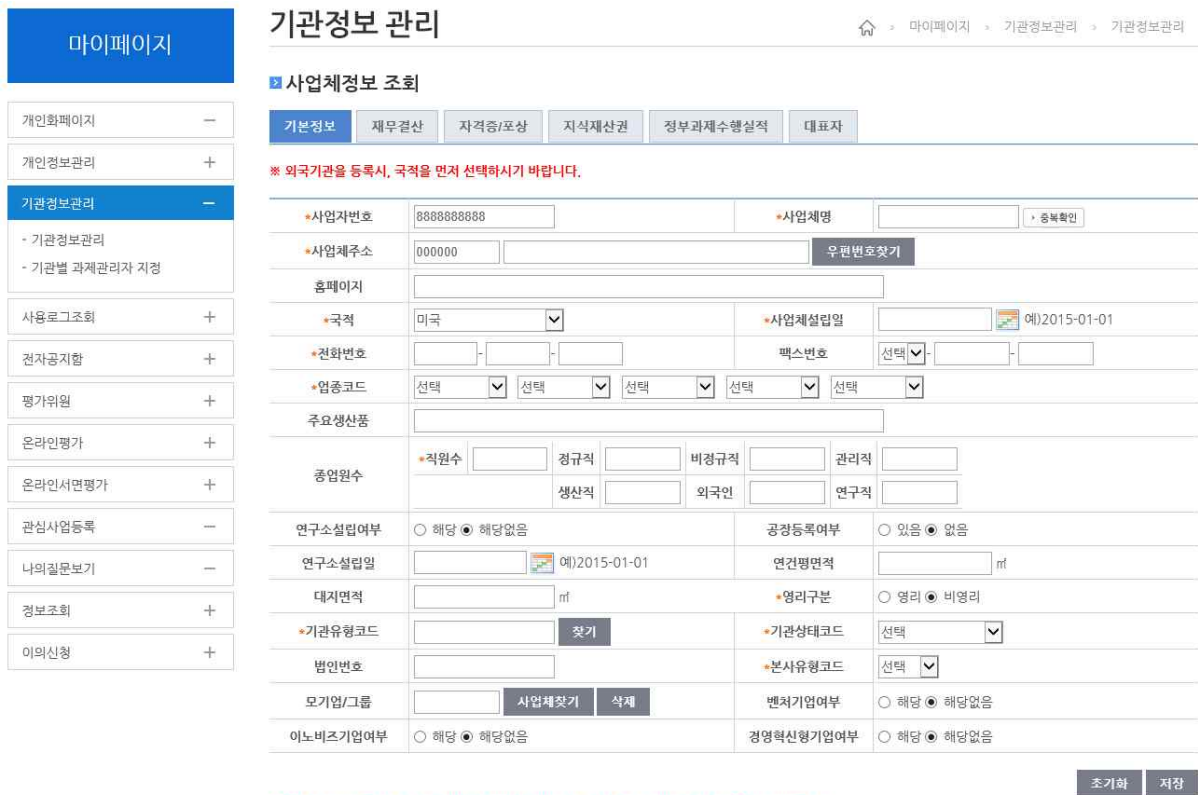
① 마이페이지



② 기관정보관리



③ 정보 입력 : 국적을 선택하면 사업자번호와 사업체주소의 우편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이를 수정하지 않고 주소와 나머지 입력사항을 작성



- * [기관유형코드]를 통해 기술로 산정에 사용됩니다. 반드시 올바른 기업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- *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경우, 과제 협약 및 사업비 지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.
- * '사업체 인종'이 되지 않는 경우, (주)한국신용평가정보(1600-1522)으로 문의바랍니다.
- * 외국기관의 업종코드 및 업태코드는 유사한 항목을 선택바랍니다.

○ (질문) 해외수요처 개발요청서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?

< 답 변 >

-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: 매매계약서(sales contract), 주문서(P/O ; Purchase Order), 개발계약서(Development contract, 판매계약서(Sales note), 각서송장(Memorandum), 양해각서(MOU) 등
 - *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
-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
 - ① 개발품목명, ② 개발품목의 사양, ③ 납기일(Delivery date) 또는 구매예정일, ④ 개발품목에 대한 (예상)구매수량 및 (예상)구매금액은 정부출연금(정부지원연구개발비)의 3배 이상
 - *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
- 그 외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음
 - ①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, ② 신청기업과 해외수요처 간의 과거 거래 내역, ③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자, ④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

□ 구매연계형 과제(국내수요처)

○ (질문) 국내수요처(민간) 현금 부담금의 경우, 수요처의 연구개발비로 사용 가능한가요?

< 답 변 >

- 안됩니다. 수요처의 현금 부담금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수요처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○ (질문) 국내수요처(민간)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
< 답 변 >

- 네,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국내수요처가 중소기업일 경우,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. 또한, 다수요처의 경우 모든 수요처가 조건을 만족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내용	비고
업종	제조업	중소기업확인서(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) 등 *발급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smba.go.kr)
업력	창업 5년 초과	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
매출액	300억원 이상	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
신용등급	BB(bb-) 이상	한국기업데이터(크레탑) 등급 기준 등

□ 공동투자형 과제(구, 민관공동투자과제)

○ (질문) 공동투자형 과제의 투자기업 참여현황은?

< 답 변 >

<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 참여현황(63개) >

- (대기업, 15개사) 포스코, 르노삼성자동차, 삼성디스플레이, 삼성전기, 삼성SDI, 현대홈쇼핑, 삼성전자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롯데마트, NS쇼핑, 스템코, LG전자, 현대자동차, KT, KCC건설
- (중견기업, 25개사) 한솔테크닉스, 네이버, 인켈, 주성엔지니어링, 인성정보, 크루셀텍, 경창산업, 동양물산기업, 휴맥스, 오텍캐리어, 아진산업, 대동공업, 디아이씨, 톱텍, 국제종합기계, 세하, SFA반도체, 대상, JW홀딩스, 아모레퍼시픽, 삼지전자, 탑엔지니어링, JW바이오사이언스, 라이온캠텍, 아세아텍
- (공공, 23개사) 한국전력공사, 한국동서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남동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수력원자력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인천항만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석유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국토정보공사, 부산항만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가스기술공사, 한국조폐공사, 한전KDN, SRT

○ (질문) 공동투자형 과제의 연구개발비 구성 방법은?

< 답 변 >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합한 총 연구개발비가 있고, 투자기업 출연금이 **정부지원연구개발비(정부출연금)**에 대응하여 결정 됩니다.
- 따라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2억원인 과제의 경우 대략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**3억원**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, 이중 현금이 **0.3억원** 이상이어야 합니다. *코로나19 대책에 따라 비율 변경
- 이 때, 총 **연구개발비**는 **15억원**이 되고, 추가적으로 투자기업 출연금이 (투자기업이 대기업, 공공기관인 경우) 12억원 또는 (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) 8억원이 됩니다.

구 분	지원규모 (정부)	연구개발비 비중			투자기업	
		정 부	주관연구개발기관 (현금부담비율)	투자기업**		
공동투자형	일반과제 BIG3 소부장	최대 3년, 12억 원 이내 (연간 한도X)	80% 이내	20% 이상 (현금 2% 이상)	정부출연금 대응 투자(1:1)(현금)	대기업, 공공기관
			80% 이내	20% 이상 (현금 2% 이상)	정부출연금 대응 투자(3:2)(현금)	중견기업

- * 현금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(정부지원연구개발비+기관부담연구개발비) 기준
- * 투자기업 출연금은 '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'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·운영((붙임 4) 참조)하며,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**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** (대·공기업 1:1, 중견 3:2)하는 투자계획 필요
- * 투자기업에 따라 정부출연금 12억+투자기업 출연금 12억 까지 신청 가능

□ 공통사항

○ (질문) 수요처의 구매동의서만 있으면 무조건 선정되나요?

< 답 변 >

- 아닙니다. 수요처와의 구매동의서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요건사항(신청자격) 중 하나일 뿐이지 구매동의서만 보고 선정여부를 결정하진 않습니다.
- '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' 이라는 선정취지를 생각하시어 사업계획서 작성 시 '기술개발'에 관련된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.

○ (질문)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을 유의하면 되나요?

< 답 변 >

- 1억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 구입계획을 갖고 계신 업체는 '연구장비 도입 심의서'를 함께 제출하시어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 아울러, 아래 사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입심의를 통과하셔야 최종 구입이 가능하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2016년 7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는 **1억 원 이상의 모든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(구. 미래창조과학부)에서 실시하는 범부처 차원의 도입심의**가 시행중입니다.

○ 도입심의는 1월, 12월 만 월 1회 개최되며 2월 ~ 11월까지 월 2회 씩 연 22회 심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* 도입심의 연간일정(<http://red.zeus.go.kr/schedule/event>) 확인요망

○ 통합심의 신청 방법

① RED**시설장비심의를평가서비스**(<http://red.zeus.go.kr>) 회원가입 후 접속하여 심의일정 확인 → ② 심의일 선택(상시접수) → ③ 발표자료 등록 → ④ 사업 및 장비발표(심의)

· 문의처 :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
(홈페이지) <http://red.zeus.go.kr>
(전화번호) 1670-0925 또는 042-865-3934
(전자메일) red@nfec.go.kr

○ 유의사항

- ① 장비심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려는 **주관연구개발기관**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합니다.
- ② 통합심에서 부적합(구축 불가) 판정 받은 연구시설·장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합니다.
 - 심의를 검치지 않았거나 심의에서 부적합 판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시설·장비를 사업비로 구축한 경우 **정산 시 전액 불인정 하여 환수처리 합니다.**

○ (질문) 선정될 경우,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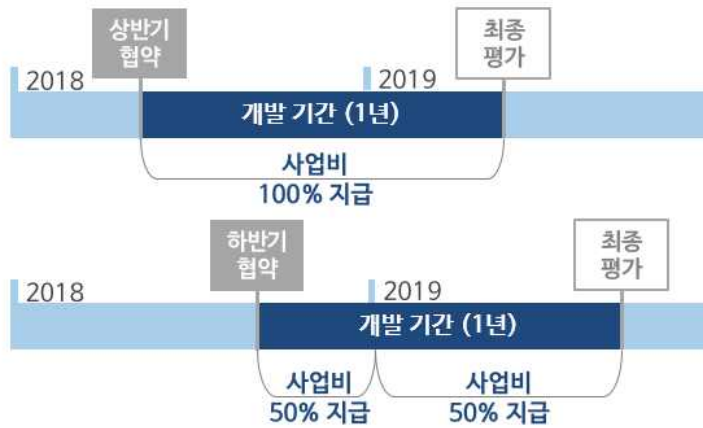
< 답 변 >

- 아닙니다. 회계연도 일치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급방법이 바뀌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사항 참고 바랍니다.

① 개발기간이 1년 이하인 과제 경우,

- 상반기 협약 : 사업비 100% 지급
- 하반기 협약 : 사업비 50% 지급

예시 I. 개발기간 1년인 A업체일 경우



② 개발기간이 1년 초과 ~ 2년 이하 과제 경우,

- 상반기 협약 : 1차년도(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) 사업비의 75%지급
- 하반기 협약 : 1차년도(개발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) 사업비의 50%지급

예시 II. 개발기간 2년인 B업체일 경우

